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 정 : 1991. 3. 2.

최근개정 : 2026. 3. 1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제2조(자격시험의 종류)** 삭제

[전문개정 2026. 3. 5.]

**제3조(시험시기)** ①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에 실시한다.(2023.11.16. 개정)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에 실시한다.(2023.11.16. 개정)

**제4조(자격시험 출제)** ① 외국어 시험의 출제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제2외국어시험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외국어 학과 소속 교수가 출제한다. 다만, 해당 외국어 학과 소속 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출제한다.

③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 각 학과 주임교수가 출제하며, 시험문항 및 관련 자료는 대학원 교학과에서 관리한다.

④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 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6. 3. 5.]

**제5조(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 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6. 3. 5.]

**제6조(응시절차 및 응시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제7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내국인 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9호까지는 외국어 시험 응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으로 한다.

1.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
2. 목원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한 자
3. TOEIC: 800점 이상
4. TOEFL: 530점 이상
5. CBT: 197점 이상
6. iBT: 71점 이상
7. IELTS: 5.5 이상
8. TEPS(NEW TEPS): 400점 이상
9. CEFR: B2

② 외국인 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1. 목원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18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시험(70점 이상)에 합격
2. 외국어 시험 응시일 기준 2년 이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③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이 외국어 시험 응시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한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6. 3. 5.]

[전문개정 2026. 3. 18.]

**제7조의2(종합시험의 면제)** 종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2019.10.18.개정]

1.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0(4.5만점 기준) 이상인 석·박사 과정생
2.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또는 SCI(SSCI)급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박사 과정생[2019.01.05.개정]

[제목개정 2026. 3. 5.]

**제8조(재응시) 삭제**[2019.10.18.개정]

[제목개정 2026. 3. 5.]

## **제2장 외국어 시험 <개정 2026. 3. 5.>**

**제9조(시험 과목)**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영어
2.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 1개

[전문개정 2026. 3. 5.]

**제10조(합격 인정)** 외국어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6. 3. 5.>

[제목개정 2026. 3. 5.]

## **제3장 종합시험 <개정 2026. 3. 5.>**

**제11조(응시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어 시험 합격 또는 목원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
2. 3학기 이상 정규등록
3. 1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②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어 시험 합격
2. 4학기 이상 정규등록
3. 54학점 이상(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 포함)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전문개정 2026. 3. 5.]

**제12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6. 3. 5.]

**부칙**

1.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내규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2604호,2022.05.25.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는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2023.11.16. 개정)

**부칙(내규 제26604호,2026.3.5.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내규 제26606호,2026.3.18.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시험 응시료, 출제 및 채점 수당 <신설 2026. 3. 5.>

자격시험 응시료, 출제 및 채점 수당 (제4조제4항 및 제6조 관련)

1. 자격시험 응시료

구분	응시료	비고
외국어 시험	10,000원	
종합시험	10,000원	과목별로 납부

2. 출제 및 채점 수당

구분	수당	비고
외국어 시험	1명당 5,000원	신청자가 1명인 경우 전액지급
종합시험	응시과목당 5,000원	

(별지 1호) (2023.11.16. 개정)

# 외국어 자격시험 신청서

◆ 시행일자 : 20 . . ( ) : ~ (1시간)

학과 / 과정	/	학번 / 학기	/
성명		신청과목	전공영어 [ ]
연락처			한국어 [ ]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9조, 제14조(시험 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

제10조, 제15조(합격 인정)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외국어시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 항목	규정 및 보존기간
외국어시험신청업무처리	학과, 과정, 학번, 학기, 성명, 연락처, 신청과목 등	시험및성적관리 : 10년 「대학원 학칙」 제 7장 제 25조(자격시험)

위와 같이 외국어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별지 2호) (2023.11.16. 개정)

## 종합시험 자격시험 신청서

◆ 시행일자 : 20 . . . ( ) : ~ (과목당 1시간)

학과 / 과정	/	학번 / 학기	/
연락처		성명	

순번	신청과목	출제교수	비고
1			
2			
3			
4			
5			

※신청과목은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종합시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 항목	규정 및 보존기간
종합시험업무처리	학과, 과정, 학번, 학기 연락처, 성명 등	시험및성적관리 : 10년 “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3장 및 제5장(석사, 박사 종합시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위와 같이 종합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임교수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